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1993.6.21>

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구 분	승 인 사 항	신 고 사 항
1. 열원시설	가.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 다만, 제2조제1호 바목의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을 제외한다.	해당없음
2. 열수송관	가.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의 설치공사계획	가.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설치 나.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변경 다.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변경으로서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지름 또는 길이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라. 설치된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교체
3. 순환펌프	가. 설치공사계획	가.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